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. 27 선고 2020가단1494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덕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

담당변호사 김현희

변 론 종 결 2021. 1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. 27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 B은 원고에게 1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8. 10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
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2020. 11. 2.자 증여계약은 135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

최소한다. 피고 C은 원고에게 1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D은 2020. 1. 17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(상속지분 3/9), 자녀인 E, F, 피고 C(각 상속지분 2/9)이 있다. E은 2020. 2.경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(상속지분 3/7)과 자녀인 원고, H(각 상속지분 2/7)가 있다.

나. 2020. 7. 23. 공증인 I에게, H는 '원고와 피고들 및 F이 H에게 사서증서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(원고와 피고들, G, H, F의 각 이름이 부동산자로 인쇄되어 있고 각 이름 옆에 각 해당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. 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'라 하고, 이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.)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.'라는 내용의 원고와 피고들 및 F 명의의 위임장(이하 '이 사건 위임장'이라 한다)과 원고와 피고들 및 F의 각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, 본인 겸 원고와 피고들 및 F의 각 대리인의 지위에서, G은 본인의 지위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하여 그 인증을 받았다.

상속재산분할협의

망 D 사망과 망 E의 사망으로 개시된 서울 강북구 J아파트, K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상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(원고, 피고들, G, H, F)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한다.
2.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20. 8. 9.까지 매매 완료한다.
3. 피고 B은 그 매매대금으로 2020. 8. 9. 오후 5시까지 F, 피고 C, 원고에게 각 1억 3,500만 원씩 지급한다.
4. F은 지급받은 1억 3,500만 원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.

5. G, H는 이 사건 상속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.

공동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협의하고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의서 6통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유한다.

2020년 7월 14일

다. 피고 B은 2020. 8. 20.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4,500만 원에 매도하였고, L는 2020. 11. 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피고 C은 2020. 8. 20. L와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, 임대차기간을 2020. 11. 2.부터 2022. 11. 1.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9, 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가. 망 D과 망 E의 사망으로 망 D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, 피고들, G, H, F은 2020. 7. 14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.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른 1억 3,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L에게 매매대금 6억 4,500만 원에 매도하였다. 피고 C은 L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 피고 B은 피고 C이 L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B이 L로부터 지급받을 잔금과 상계하기로 함으로써 피고 C에게 4억 원을 증여하였다.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1억 3,500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잔금 중 4억 원을 피고 C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들의 악의도 인정된다.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20. 11. 2.자 증여계약은 1억 3,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C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3,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협약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무효이다(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8299 판결 참조).

원고는, 망 D의 사망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1억 3,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,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고 있다. 위 법리에 의하면, 상속재산분할협약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, 아래에서는 먼저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졌는지 본다.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(갑 제1호증 및 을 제11호증 중 사문서 부분)가 있다.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본다. H가 공증인 I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 및 이 사건 위임장 및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 중 피고 B 명의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을 대리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하고 그 인증을 받은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.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, H가 2020. 7. 23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 및 이 사건 위임장 중 피고 B 이름 옆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한 후 이를 공증인 I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 중 피고 B 명의 부분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 및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 중 피고 B 명의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.

을 제14호증의 4의 기재 및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F으로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피고 B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

아니하므로,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.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병훈